

의안번호	2216294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6.02.20.
추계번호	26G04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-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
- 국내시장복귀계획을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환율변동위험 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외국 자회사 수입배 당금의 익금불 산입 특례) 신설	○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*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- 95%(법인세법 §18의4 기준) → 100% - (적용 요건) 출자지분을 10%이상 (해외자원개발사업 5%이상) - (적용기한) 2026.12.31.	-
2	안 제91조의26 (국내시장복귀 계좌를 통한 투 자에 대한 과세 특례) 신설	○ (주요 내용)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('RIA*')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에서 공제 ※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○ (요건) RIA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외상장주식을 매도 후, 매 도 대금을 1년 간 RIA 내에서 투자 - (매도 대상)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국외상장주식 - (RIA 납입 한도) 5천만원 - (RIA 운용 자산) 국내상장주식, 집합투자재산의 80% 이상을 국내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, 예탁금 등 - (중도 인출) 납입 후 1년 이내 인출 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 세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※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 제외, - (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) ○ (공제액) 국외상장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 하되, 2026년 중 국외상장주식을 매입할 경우 공제 비율을 추가로 조정 - (공제 비율) 2026.1.1.~3.31. 기간 양도 시 100% 공제 2026.4.1.~6.30. 기간 양도 시 80% 공제 2026.7.1.~12.31. 기간 양도 시 50% 공제 - (국외주식 매입 시) 2026년 중 국외주식을 매입할 경우, 시행령에 따라 공제 비율을 조정함* ※ [참고] 재정경제부, 보도자료(2026.1.20.)¹⁾ $\text{조정비율} = 1 - \frac{\text{RIA외 국외주식 순매수금액}^*}{\text{RIA내 국외주식 매도금액}}$ * 기간별 매수·매도금액에 1분기 100%, 2분기 80%, 하반기 50%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	-
3	안 제91조의27 (환율변동위험 회피 과생상품 에 대한 과세특 례) 신설	○ (투자액 공제)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과생상품('환헛지 상품') 투자 시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공제 - (공제 대상)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금액 - (공제액)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헛지 상품 투자액의 5%(한 도 500만원) ○ (소득액 비과세)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헛지 상품의 거래 등 에서 발생한 과생상품 양도소득세 비과세	-

주: 1) 재정경제부, 보도자료, “국내시장 복귀계좌(RIA),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제한법 등 개정 추진”, 2026.1.20.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(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1조의26(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91조의27(환율변동 위험회피 과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(안 제23조)

□ 개정안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상향될 경우, 과세표준이 축소되므로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3조)

- 내국법인이 10%이상(해외자원개발의 경우 5%이상)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%에서 100%로 상향함에 따라, 해당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됨

※현행 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4는 해당 익금불산입률을 95%로 규정하고 있음

□ 내국법인이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대기업의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변동폭을 보임

- 2021~2024년 배당금 규모를 살펴보면 대기업 해외투자 배당금은 연도별 변동폭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
 - 대기업 해외투자 배당금(단위: 백만달러): ('21) 5,218 ('22) 5,042 ('23) 12,911 ('24) 8,211
- 현지법인의 업종에 따라서도 배당금 증감 양상이 상이하며, 업종별 구성에도 변화가 관측됨
 - 대기업 해외투자 배당금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감이 나타남
 - 중소기업 해외투자 배당금의 경우 제조업 현지법인의 비중은 확대되는 반면, 부동산업 현지법인의 비중은 2022년 이후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

[표 1] 투자자 기업규모 및 현지법인 업종별 배당금 지급 현황

(단위: 백만달러)

연도	기업규모	현지법인 업종						
		합계	제조업	광업	도소매업	정보통신업	부동산업	기타
2021	전체	5,874	4,135	678	278	40	413	330
	- 대기업	5,218	3,886	592	263	25	156	296
	- 중소기업	561	245	0	15	15	253	33
	- 기타	96	4	87	0	0	3	2
2022	전체	5,870	3,297	710	419	353	704	387
	- 대기업	5,042	3,066	687	410	331	182	366
	- 중소기업	799	228	0	9	22	520	20
	- 기타	29	3	23	0	0	2	1
2023	전체	13,524	8,586	623	3,285	105	340	585
	- 대기업	12,911	8,141	588	3,255	104	259	564
	- 중소기업	575	443	0	30	1	81	20
	- 기타	39	3	35	0	0	1	0
2024	전체	8,969	5,644	903	616	739	261	806
	- 대기업	8,211	5,182	830	570	732	116	781
	- 중소기업	681	459	0	45	7	144	26
	- 기타	78	3	74	0	0	1	0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

□ 개정안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상향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할 수익배당금의 규모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나, 배당금 규모의 높은 변동성으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나.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 및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(안 제91조의26, 제91조의27)

-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국내시장복귀계좌('RIA')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공제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1조의26)
 -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('환헷지 상품')에 투자 시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,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1조의27)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통계 등의 자료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국내시장복귀계좌(RIA)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(비과세 한도 250만원 초과) 중에서 RIA를 통해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인원 및 1인당 양도액, 국외상장주식 매도 시점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의 부재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－ 국내시장복귀계좌 투자 후 2026년 중 국외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순매수금액 수준 역시 세수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, 현 시점에서 해당 정보를 예측하기 어려움
 -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(환헷지 상품)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2026년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(비과세 한도 250만원 초과) 중에서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인원 및 투자액, 환헷지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의 부재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